

##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11. 11  
시민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1. 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 11. 4.
- 다. 상정일자 : 제7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0. 11. 11)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남 지적과장)

#### 가. 제안이유

부동산중개업법(2000.1.28 법률 제6236호)이 전문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종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에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등록 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2000·1·28 법률 제6236호)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라면 두사람이 수수료도 상의해서 받을수 있다는 것인지?
- 답변요지(김영남 지적과장) : 그런 것은 아님.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조례가 폐지되어도 단속 처벌규정이 따로 있는지?
- 답변요지(김영남 지적과장) : 예. 있습니다.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앞으로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 답변요지(김영남 지적과장) : '94. 8. 8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한건도 없으며 구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 등에 분쟁해결을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2000.1.28 법률 제6236호)이 전문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함.

### 3. 개정근거

- (1) 부동산중개업법(2000·1·28 법률 제6236호)의 개정으로 삭제된 종전 제37조의3내지 제37조의5
- (2)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0·6·7 대통령령 제16837호)의 개정으로 삭제된 종전 제42조
- (3)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2000·7·29 건설교통부령 제250호)의 개정으로 삭제된 종전 제33조

### 4. 조례(안) : 따로붙임

###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0. 10. 10 ~ 10. 3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00.11. 3)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